##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5조~40조(관리감독자의 직무, 사용의 제한 등), 제171조~178조(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), 제187조~190조(화물자동차), 제196조~206조(차량계 건설기계 등), 제385조~386조(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), 제387조~393조(화물취급 작업 등)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, 운반, 실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·전락·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·협착·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, 운반,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·전락·접촉·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접촉·협착·추락 등의 재해 방지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  - (가) "덤프트럭"이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(토사, 모래, 자갈등) 운반에 적합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건설기계를 말한다.
  - (나) "화물자동차" 라 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적 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㎡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.